Z - 49 - 2022

근로자 협의 및 참여에 관한 지침

2022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국안전문화진흥원
- 제·개정 경과
 - 2022년 12월 리스크관리분야 표준제정위원회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 - Consulting employees on health and safety_HSG 232(2013)
 - ISO 45001:2018 안전보건경영시스템-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
 - Employee involvement: Are your workers engaged in their own safety?_Dupont The miracles of sciense (2011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 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 해당 최근 개정 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2년 12월 31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KOSHA GUIDE Z - 49 - 2022

근로자 협의 및 참여에 관한 지침

1. 목 적

본 지침은 조직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개발, 기획, 실행, 성과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모든 적용 가능한 계층과 기능의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(있는 경우)와의 협의와 참여를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- 2.1 조직은 다음 사항에 대해 근로자 협의 및 참여 프로세스를 수립, 실행 및 유지하는데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.
- 2.1.1 협의 및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방법(mechanisms), 시간, 교육 훈련 및 자원을 제공 [비고] 근로자 대표제는 협의와 참여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.
- 2.1.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하여 명확하고, 이해 가능하며 관련된 정보에 시의적절한 접근 제공
- 2.1.3 참여에 대한 장애 또는 장벽을 결정하여 제거하며 제거할 수 없는 것은 최소화
 - [비고] 장애 및 장벽에는 근로자의 의견이나 제안, 언어 또는 독해(literacy) 장벽, 보복 또는 보복위협, 근로자 참여를 방해하거나 처벌하는 방침 또는 관행에 대한 대응 실패가 포함될 수 있다.

3. 용어의 정의

3.1 근로자(worker): 조직의 관리하에서 업무/작업 또는 업무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인

Z - 49 - 2022

원/사람

[비고 1] 인원은 정규적 또는 비정규적으로, 간헐적 또는 계절적으로, 임시 또는 파트타임 기반 등 다양한 계약 하에 유급 또는 무급으로 업무 또는 업무 관련 활동을 수행한다.

[비고 2] 근로자에는 최고경영자, 관리자 및 관리자가 아닌 인원이 포함된다.

[비고 3] 조직의 통제 하에서 수행되는 업무 또는 업무 관련 활동은 조직에 고용된 근로자, 또는 외부

3.2 참여(participation):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(involvement)

[비고] 참여에는 안전보건위원회 및 근로자 대표(있는 경우)와의 적극적 참여가 포함된다.

3.3 협의(consultation)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견을 구함.

[비고] 협의에는 안전보건위원회 및 근로자 대표(있는 경우)와의 협의가 포함된다.

4. 근로자 협의 및 참여 절차 수립 방안

4.1 목적 및 기대효과

- 4.1.1 근로자 협의 및 참여 절차 수립 및 운영을 통해 조직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
 - (1) 생산성 향상 작업장 안전과 보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근로자는 통계적으로 더나은 생산성을 창출한다.
 - (2) 조직 업무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선
 - (3) 보다 높은 수준의 몰입과 동기부여

Z - 49 - 2022

- 4.1.2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근로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직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.
 - (1) 작업장 안전과 보건 향상 근로자는 조직이 제품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유해 위험요소를 파악, 평가하여 이를 제거, 저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.
 - (2) 안전보건과 관련한 올바른 의사결정 자신의 업무에 대한 폭넚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.
 - (3) 의사결정에 따른 조치 이행에 대한 조직 차원의 강한 의지와 신념 근로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난다.
 - (4) 상호협력과 신뢰 사업주와 근로자가 의사소통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상호 간의 입 장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된다.
 - (5)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.

4.2 적용대상

- 4.2.1 조직은 다음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 근로자와 협의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.
 - (1) 신규 설비 또는 공정 라인의 속도와 작업반 운영을 포함하는 작업 시스템과 같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의 실행;
 - (2) 안전보건관련 법규 요구사항 준수를 위한 역량을 갖춘 인력의 배치(역량을 갖춘 인력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지도, 조언,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식, 숙련도,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.)
 - (3) 작업자가 자신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과 이를 제거, 저감할 수 있는 안전조치와 비상 시 대비대응대책 등에 대한 정보의 적시제공
 - (4) 안전보건 교육훈련의 기획 및 운영

Z - 49 - 2022

- (5) 신기술 도입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
- 4.2.2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강조하여야 한다.
 - (1)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를 결정
 - (2) 안전보건 방침 수립
 - (3) 적용 가능한 경우 조직의 역할, 책임 및 권한 부여
 - (4)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결정
 - (5) 안전보건 목표 수립과 목표 달성 기획
 - (6) 외주처리, 조달 및 계약자에게 적용 가능한 관리 방법 결정
 - (7) 모니터링, 측정 및 평가가 필요한 사항 결정
 - (8) 심사 프로그램의 기획, 수립, 실행 및 유지
 - (9) 지속적 개선 보장
- 4.2.3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가 다음 사항에 참여하도록 강조하여야 한다.
 - (1) 근로자의 협의와 참여를 위한 방법 결정
 - (2)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
 - (3)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조치 결정
 - (4) 역량 요구사항, 교육 훈련 필요성, 교육 훈련 및 교육 훈련 평가의 결정
 - (5)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항과 의사소통 방법을 결정

Z - 49 - 2022

- (6) 관리 수단과 관리 수단의 효과적인 실행 및 사용 결정
- (7) 사건 및 부적합의 조사 그리고 시정조치 결정
 - [비고 1]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의 협의와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에 적용하는 것을 의도하지만, 예를 들어 조직에서 업무 활동 또는 기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리자를 배제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는다.
 - [비고 2] 근로자에게 무료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, 그리고 가능한 경우 근무시간에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의 참여에 중대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.
- 4.3 안전보건 정보제공
- 4.3.1 조직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협의 및 참여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.
- 4.3.2 특히 근로자 대표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들이 제대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정보(사전 일정 및 장소 조율, 회의 안전에 대한 정보, 참여자 등)를 사 전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4.3.3 이러한 정보에는 작업환경 및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유해위험요소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대책 그리고 사고발생 시 대비대응 절차 등이 포함된다.
- 4.3.4 상기 정보를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문서화된 정보의 일환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형식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.(예, 위험성평가 결과, 사고조사 보고서 등)
- 4.3.5 만약, 상기 정보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면제된다.
 - (1) 국가 보완과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
 - (2) 해당 정보와 관련된 인원이 관련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
 - (3) 해당 정보 유출로 인해 조직과 관련 인원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있는 경우

Z - 49 - 2022

(4) 소송과 같은 법률 절차 이행 가운데 해당 정보를 입수한 경우

4.4 근로자 협의 방안

- 4.4.1 근로자 협의는 조직이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직의 입장을 책임감 있게 설명하는 활동을 포함한다.
- 4.4.2 법률에서 근로자 협의 시기, 기간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니 '적절한 시간'을 보장하도 록 하고 있다.
- 4.4.3 현장에서 이 '적절한 시간'에 대한 해석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가 제기된 안건을 숙고하여 관련 조치를 마련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.

4.5 근로자 참여 방안

- 4.5.1 근로자 참여 방안은 작업장 관리, 안전점검, 안전보건 위원회 등 작업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.
- 4.5.2 그러나 근로자 참여 활동의 성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근로자가 이러한 활동이 의미와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.
 - (1) 작업장 정리정돈 작업장 정리정돈을 보안이나 청소업체에 맡겨둬서는 안된다. 자 재 보관, 장비 및 설비 유지보수에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. 작업장 정리정돈을 근로자가 자신의 의무이자 책임을 받아들일 때 넘어짐, 추락, 끼임과 같은 사고를 초래하는 유해위험요인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. 이는 또는 효율적인 자재관리와 유지보수를 통한 설비 손실과 같은 부수적인 기대하 효과를 창출한다.
 - (2) 안전점검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근로자가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 발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대책 수립에 자신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안 전점검활동을 근로자가 동료가 놓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훈련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

Z - 49 - 2022

것이다.

- (3) 의사소통 근로자가 안전보건이슈에 대해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안전보건과 관련된 현장의 정보와 목소리가 공유될 때 교육훈련 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. 안전관찰과 안전보건 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의사소통을 촉진하여야 한다.
- (4) 안전관찰 작업자가 동료 작업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 조언하고 안전한 행동을 독려토록 하여야 한다. 작업자가 자신의 동료에 대해 판단하고 조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그 대상이 자신보다 연장자이거나 조직에서 까다롭다고 소문난 사람이면 특히 그렇다.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근로자 자신과 동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신념 하에 근로자가 긍정적인 측면(안전한 행동의 독려)에 초점을 맞춰 자신이 관찰한 내용과 의견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(5) 안전보건 위원회 안전보건 위원회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. 근로자만이 안전보건 위원회에서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. 안전보건 위원회는 이런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상호 신뢰의 안전문화를 촉진할 수 있다.
- (6) 사고조사 모든 사고와 아차사고를 조사함으로써 조직은 중대사고와 직결되는 유해위험요소와 사고 발생 매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. 사고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는 현장의 경험을 통해 사고발생 경유와 해결방안에 대한 안목을 제공하여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. 그러나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.

Z - 49 - 2022

[부록 A] 근로자 협의 및 참여 절차수립 사례

근로자 협의 및 참여 절차

1.0 목 적

이 지침서는 본사 및 사업소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을 위하여, 조직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안전보건경영활동에 참여하고 활동에 대한 의사소통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내·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0 적용범위

이 지침서는 조직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안전보건관리 측면의 대내・외 이해 관계자의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체계에 적용한다.

3.0 참 조

산업안전보건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(고시, 예규 등)

4.0 정 의

4.1 이해관계자

안전보건경영 성과에 영향을 받거나, 그 성과와 관련된 개인과 단체로서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로 구분한다.

4.2 내부 의사소통

각 조직단위인 여러 부서 및 직급간의 의사소통을 의미한다.

4.3 외부 의사소통

지역주민, 협력업체, 정부기관 및 일반대중 등 사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사소통을 의미한다.

4.4 안전보건 정보

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또는 자료, 관련법규 및 법규 변동사항, 사외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및 조치사항, 안전보건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다.

Z - 49 - 2022

5.0	책 임
5.1	최고경영자(사장)
5.1.1	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및 내부 의사소통 및 공포
5.1.2	방침 이행여부 확인결과 내부 의사소통
5.2	산업안전보건 관리부서장
5.2.1	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대한 내·외부 의사소통
5.2.2	대 인증기관에 대한 외부 의사소통
5.2.3	안전보건 정보의 분석 및 내부 의사소통
5.2.4	안전사고 및 비상사태에 대한 내부 의사소통
5.2.5	안전보건에 관련된 대 관청 업무수행
5.2.6	중대한 안전보건 측면에 대한 외부 의사소통(대 관청, 공공기관, 지역주민)
5.2.7	비상사태 발생시 지역사회(언론 포함) 및 지역주민 홍보에 관련된 사항
5.2.8	제공할 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자문(필요시)
5.3	각 부서장
5.3.1	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안전보건정보의 접수 시 안전관리부서 통보
5.3.2	안전사고 및 비상사태 발생시 내부 또는 외부 의사소통
5.3.3	담당부서 업무에 관련된 안전관리부서의 대관 업무 협조
5.3.4	안전보건 문제 및 활동에 대한 직원의 견해, 개선아이디어, 관심사항의 검토와 안 전관리부서 통보
5.3.5	기타 내・외부 의사소통을 위한 협조

Z - 49 - 2022

6.0	유의시	ㅏ힝

- 6.1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의사소통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.
 - 6.1.1 제공할 안전보건의 정보종류와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
 - 6.1.2 내·외부의 안전보건에 관한 문서접수처리 및 회신
 - 6.1.3 안전보건 문제 및 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(견해, 개선 아이디어, 관심사항)와 검토 회신

7.0 절 차

- 7.1 내부 의사소통 사항
 - 7.1.1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방침 관리 및 경영 검토 절차에 따라 실시 한다.
 - 7.1.2 위험성평가 및 기회평가 결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.
 - 7.1.3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관련법규 등록관리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.
 - 7.1.4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목표 및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.
 - 7.1.5 안전보건활동추진계획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목표 및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.
 - 7.1.6 안전보건 문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화, 문서관리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.
 - 7.1.7 안전보건활동(운영관리) 관련 문서(절차서 및 지침서)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활동(운영관리)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.

Z - 49 - 2022

- 7.1.8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절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.
- 7.1.9 부적합 사항과 시정 및 예방조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.
- 7.1.10 경영자 검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경영자 검토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.
- 7.2 내부 의사소통 절차(방법)
 - 7.2.1 부서 간, 직급 간 의사소통 부서 간, 직급 간 의사소통은 문서화, 회람, 게시판 게시, 공고, 회보, 회의, 교육간행물 및 기타 방법으로 전달한다.
 - 7.2.2 사업소 산업안전보건 관리부서장은 년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자체 산업안전관 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각 부서에 통 보하여야 한다.
- 7.3 외부 의사소통 절차
 - 7.3.1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사소통 접수

주관부서장은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중대한 안전보건 측면 및 안전보건 불 만에 관련된 공문서와 전화, 구두, 기타의 방법에 의한 의사소통사항에 대하 여 접수하여야 한다.

7.3.2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대응 및 회신

주관부서장은 접수된 내용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다음과 같이 취한다.

- 1) 중요한 사항은 문서화하여 보고
- 2) 필요시 안전관리부서와 관련부서에 협조요청
- 3) 적절한 대응조치 및 관련내용을 회신
- 4) 조직의 의사결정 사항의 기록 및 유지
- 7.3.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중요한 안전보건 측면에 대한 외부 의사소통 사항은 문서규정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Z - 49 - 2022

7.3.4 기타 의사소통 사항

- 1) 관련부서장과 산업안전보건 관리부서장은 기타 부서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2) 산업안전보건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 관련자료, 비상사태 관련자료 등을 준비하고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.

7.4 참여 및 협의

- 7.4.1 안전보건담당자는 다음의 안전보건 관계에 대하여 작업자가 참여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 및 유지해야 한다.
 - 1) 근로자 및 협력회사 직원이 위험요소 파악, 리스크 평가 및 관리결정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2) 관계되는 작업자들이 안전사고 조사에 대하여 적절히 참여하고 자신들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참여하도록 한다.
 - 3) 조직은 적절한 때(안전보건관련 이슈 등)에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계 있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하여 협의함을 보장해야 한다.

7.5 일반사항

- 7.5.1 안전보건 측면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의사소통되어야 한다.
- 7.5.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사소통(요구, 불만 요청, 의뢰 등) 사항은 접수되고 문서화되어야 하며 적절한 대응조치가 취해 져야 한다.
- 7.5.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또는 중요한 안전보건 측면에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각 부서의 결정사항과 대응 결과는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.